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회사 져

일 시 : 2018. 06. 23. 09시

장 소 : 본사 회의실

| | | | |
|-------|------|----------|----------|
| 주주 총수 | 192명 | 이의 주식총 수 | 413,679주 |
| 출석주주수 | 13명 | 이의출석주식총수 | 304,896주 |

본 회사의 대표이사 박춘하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단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 정족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과 같은 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전면개정 및 승인의 건

본 회사의 회사 경영에 있어서 전환사채발행의 필요성과 사회 경제적 변화 및 시장사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수 있음을 설명하고, 상법개정과 전환사채의 발행에 수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개정 상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유리함이 있어서 이에 정관 규정을 별첨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첨부 : 1. 정관전면개정안 1부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각 10시)

위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각 기명날인하다.

2018. 06. 23.

주식회사 져

의장 대표이사 박춘하 (법인인감)

사내이사 박윤하 (인)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줌(ZAM Co.,Ltd)"이라고 부른다.

제 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LED 제조 생산 및 도.소매업
1. LED 시공 설치업
1. 전자 제품 제조 생산 및 도. 소매업
1. 전자 상거래업
1. 수출.입업
1. 창고업
1. 물류 대행업
1. 식품 및 농수산물 제조, 유통 및 도.소매업
1. 건축업
1. 토목업
1.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1. 전기 안전관리대행업, 전문건설 하도급
1.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1. 신재생에너지 시설, 기계설계, 제작, 판매, 시공, 수리업, 유지보수
1. 태양광 시설, 기계설계, 제작, 판매, 시공, 수리업, 유지보수
1.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1. 교통안전 시설, 기계설계, 제작, 판매, 시공, 수리업
1. 신호등주, 신호제어기, 조명제어
1. 수배전반 시설, 제조, 기계설계, 제작, 판매, 시공, 수리업, 유지보수
1.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 ① 당 회사는 본점을 충청북도 음성군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현지법인, 지점, 출장소 및 사무소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zamled.com>) 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 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 7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 시에 1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조 【주식의 조유】

-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당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의결권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다.

제 9조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당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종류주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 ① 종류주식은 참가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 기준 연 5%의 배당을 우선 배당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 ②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 ③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종류주식의 인수인은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의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당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종류주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①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5%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원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갱신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의 3 【전환주식】

당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주식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① 전환기간: 종류주식의 주주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종류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종류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전환된다.

②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종류주식의 주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을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본 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가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3)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발행 전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 (4)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이 평가가액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5)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6)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④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 ⑤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제9조의 4 【상환주식】

당 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상환주식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 ① 상환청구권: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종류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환조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 ③ 상환방법: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경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 ④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종류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종류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⑤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전 상황: 종류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종류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종류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제9조의 5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나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다만, 의결권의 유무는 신주 발행시 이사회에 의하여 정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의 연 1%이상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주 배당률을 정한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하여 전환권 행사금액 기준 연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회사에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회사는 이사회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우선주주의 상환청구권 또는 회사의 상환권 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우선주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우선주주는 회사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상환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이 제3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을 통해 배당가능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에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다.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상환주식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상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보장수익률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되, 본건 종류주식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

라.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우선전환주식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전환조건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사의 결의로 약정계약에 따른다.

나. 전환청구기간은 당해 우선주식의 발행일(주금납입일 익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이사회 또는 약정계약에서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다.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회사는 위 1호 및 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제정할 수 있다.

(1)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배정하는 경우

(8)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국내외회합 또는 제휴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일반공모증자】

-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 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5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 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 취급 장소와 대행 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 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 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 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 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 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 개서 대리인의 증권 대행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4조의 명의 개서대리인 또는 본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 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또는 각종 연기금포함), 국내외 법인, 일반투자자 및 투자조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 임원, 종업원 및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두 종류 이상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주식의 구성비율 및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조건은 사채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 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신주인수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0조 【소집 시기】

-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제21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사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통지 또는 E-mail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단, 주주 전원동의 하는 경우 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 사항을 제 4조에서 정하는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주주 총회의 소집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소집지】

주주 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되고, 대표이사 사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

준용한다.

제25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 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이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 사 . 이 사 회 . 감 사

제32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감사 1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 일십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 1명 이상,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사외 이사를 둘 수 있다.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4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35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 1명과 필요한 경우에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이사 3인 이하인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제37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를 대표이사 이사회 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며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8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감사의 직무】

- ①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 【감사의 기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여 이 회사 업무의 주요 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제37조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43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4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와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와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이사 및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안)

제1조 (목적)

이사와 임원의 퇴직금 및 특별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선임된 상근이사 및 임원으로서 퇴직 당시 등 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 이사에 한한다.

제3조 (퇴직금 지급기준)

- ① 연 급여(상여금 포함)의 1/10의 해당금액에 최대 4배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사 및 임원 퇴직금의 추가 증액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위임한다.

제4조(특별퇴직공로금)

회사의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사 및 임원에게는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특별 결의를 통해 특별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46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이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이 회사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영업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기총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제 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 1항의 서류와 감사 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 그 등본을 지사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48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의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
-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
- ③ 임의 적립금
- ④ 배당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9조 【이익배당】

- ①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
- ⑤ 주식발행 초과금의 인한 준비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